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떡값 검사’ 실명 공개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조한창 판사는 9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대표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녹취록의 내용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그 동안 충실하게 공무를 수행했던 점을 감안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표는 2007년 5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이른바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으며 전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2009년 2월 9일

‘독립군 토벌한 박정희’ 역사서 명예훼손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원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유 모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4년 조선족 작가 류연산

씨가 쓴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 재판 조선인 친일 행적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에는 박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 씨는 2005년 이 책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망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9년 2월 8일

“한겨레,李大통령에 3,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군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경준 씨가 비밀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겨레는 계약서 내용이 김 씨 주장과 같다는 전제로 의견을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가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 씨의 회사(쥘더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LKe뱅크·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 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

송을 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광운대 강연 등을 통해 4차례 이상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공언했음에도 같을 주장을 한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서 전화를 거는 등 구태가 재연된 사실에 주목하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년 2월 6일

대법원, 신문 제목의 융통성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2004년 총선시민연대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4년 9월 '정부가 565개 비정부기구(NGO)에 41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보조금 상당액이 200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했던 단체들에 지원됐다'는 내용으로 5개의 기사와 사실한 개를 보도했다.

이에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19개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가 마치 정부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선시민연대에 5억 원을, 나머지 18개 단체에 각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4개의 기사와 사실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며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다만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 운동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총선시민연대에 1,500만 원을, 나머지 단체에 각 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한 기사의 본문을 보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과 '이들 단체가 낙선운동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이 구분돼 있고 이들 단체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을 표시한 정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에서는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을 근거로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았

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했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문사가 기사의 제목을 달 때 다소간의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이는 것"이라며,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한 경우가 아니면 제목과 본문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전체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문기사 제목의 특수성을 인정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의미 있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9년 2월 5일

나경원 의원 '애첩' 비유 박사모 회장에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애첩' '관기' 등에 빗대어 비난했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가 벌금형으로 기소된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는 나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전파성이 강한 라

디오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기혼 여성인 나 의원을 상대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써 비방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소문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거래)'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 줘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정 씨는 나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나 의원을 '애첩', '관기'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정 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동아일보 2009년 2월 2일